

광주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584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58406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5. 26 선고 2022가소6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주은, 박기범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5. 26. 선고 2022가소690 판결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선고 2023.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6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 8. 14.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 자본금의 총액은 200,00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설립일 무렵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8. 15. 임기만료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공장 취득과 피고의 공장 사용

1) 원고는 2013. 11. 21. 순천시 C 공장용지 6,311㎡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위 공장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2. 4. 23.부터 D(변경전 상호 : E, 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타일, 양변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D은 2013년 말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을 원고와 함께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전기요금 납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4. 1. 15.부터 2016. 2. 16.까지 합계 28,965,440원(=전기요금 합계 22,721,840원 + 2014. 2. 17. 한전불입금 6,243,600원)을 전기요금 내지는 한전불입금으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D이 무단으로 이 사건 공장을 점유·사용하도록 하였는데, 2014. 1. 15.부터 2016. 2. 16.까지 D이 이 사건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28,965,440원을 원고가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요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전기요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당시 이사가 2인 이하였던 원고는 위 합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D이 원고의 공장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매입을 위해 피고의 처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원고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요금을 면제하여 준 것이다.

2) 이 사건 공장은 원고와 D이 같이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전기요금액수를 모두 D이 사용한 전기요금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용한 부분의 전기요금과 D이 사용한 부분의 전기요금이 분리되어 특정되지도 않는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거나,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건 소 제기 당시 위 채권은 이러한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한전불입금 6,243,600원 부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17. '한전불입금'으로 6,243,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월별 전기요금 및 수납내역에서는 위와 같은 전기요금 부과 및 수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전기요금'이라는 항목으로 매월 84,580원에서 1,314,29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였는데 그에 비해 위 6,243,600원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한전불입금 6,243,600원을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전기요금 22,721,840원 부분

D이 2013년 말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을 원고와 함께 사용한 사실, 원고가 2014. 1. 15.부터 2016. 2. 1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의 전기요금 합계 22,721,8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8, 9, 11, 12호증(갑 제1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의 제품매출액은 2014년 41,944,541원, 2015년 18,071,821원 정도, 매출원가는 2014년 218,851,175원, 2015년 120,617,291원 정도에 이르고, 재고량을 참작하면 원고가 생산한 제품의 수량은 위 제품매출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의 매출액은 2014년 약 4억 5,200만 원, 2015년 및 2016년 각 약 6억 6,800만 원, 매출원가는 2014년 약 3억 7,300만 원, 2015년 약 5억 7,200만 원, 2016년 약 5억 7,400만 원에 이르는 점, ③ 위와 같은 원고와 D의 매출원가를 비교해보면 원고와 D의 매출원가는 2배 내지 5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납부한 전기요금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이라고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가 사용한 전기요금과 D이 사용한 전기요금이 각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이 사용한 전기요금과 D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부한 전기요금을 모두 D이 사용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이 이 사건 공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부과된 전기요금을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들어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한 위 조항을 원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부당이득액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오정민 판사 정수현